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은 2005년 2월 7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제정이유

재난 및 재해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가. 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안전관리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재난 관계 행정기관·단체 및 구청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 함. (안 제2조 내지 제6조)
- 나. 위원회 회의 안전의 사전검토 및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함. (안 제7조)
- 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안 제9조 및 제10조)
- 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부구청장을 차장으로, 재난 유형별 통제관·담당관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재난의 유형에 따른 수습주무 부서의 지정 및 실무반의 구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5조 내지 17조)

마. 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본부장의 지시에 의하거나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때에 운영함. (안 제18조)

바. 본부장은 재난과 관련된 지역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역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위촉함.
(안 제22조)

사.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종로구안전관리자문단을 두도록 하고, 자문단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함. (안 제23조 내지 제29조)

아. 서울특별시종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함.
(안 부칙 제2항).

III. 검토의견

1. 제정 경위

- 각종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 2004. 3. 11, 법률 제7188호) 및 동법시행령(제정 2004. 11. 3, 대통령령 제18580호)이 각각 제정, 공포됨에 따라
-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바 있습니다.

2. 검토 사항

- 새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의 개념을 자연재해와 인적재난 이외에 에너지·통신·교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중전 별도로 수립·시행되어 오던 자연재해대책법상의 방재계획과 재난관리법상의 재난관리계획을 통합한 국가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각종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발생의 예방·구조·복구관리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재난대비의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법 제11조4항, 제16조 제3항, 제75조제2항)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총 4장 32개조의 본칙과 부칙 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장별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조정 등을 위한 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은 관할 구역안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총괄하는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4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인 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조항별 내용 검토 결과, 2004년 10월 11일 각 자치구로 시달된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과 서울시 조례안에 기초한 것이어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기타 입법 형식상 제기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몇가지 건의사항으로

- 안 제6조(회의)제1항에서 구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고 하였는데,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난발생 요인에 대한 사전대비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운영과정에서 년 1~2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 안 제12조(수당 등)에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구 소속직원인 위원”을 제외하고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것은 통상의 공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수당이나 여비지급은 옳지 못하다고 사료되므로 동 조항의 내용 중 “구 소속직원인 위원”을 “공무원인 위원”으로 수정함이 좋을 듯 합니다.

※ 서울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및 타 자치단체조례에서도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시 여비 등을 별도 지급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IV.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 2004. 3.11, 법률 제7188호)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홍수·호우(豪雨)·폭풍·해일(海盜)·폭설·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제9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간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③중앙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의 검토, 재난의 대비·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협의·조정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행정자치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친 재난의 수습은 중앙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각각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소방방재청장이 된다.

⑤중앙위원회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중앙위원회·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지역위원회) ①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시·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하에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부의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 (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14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며, 중앙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때에는 주무부처의 장소속하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수습본부를 둔다.

④중앙본부장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을 구성하여 해외재난이 발생한 국가에 파견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대책본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해당 관할구역안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다만, 당해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지역본부장의 권한 등) ①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제39조 (동원명령 등) ①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의 동원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응급조치를 위하여 관계직원의 출동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물자 및 지정된 장비·인력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요청
3.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의 지원 요청

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 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정 2004. 11. 3, 대통령령 제18580호)

제40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
2.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전기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8.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9.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0.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한국방재협회
11.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1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